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2020. 10. 27.)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0-138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0년 10월 12일(월)
- 라. 회부일자: 2020년 10월 13일(화)

2. 제출사유

정부합동평가 과제로 시달된 자치법규 정비 세부지표 중 미정비된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부합동평가 정비대상으로 통보받은 어려운 한자어 순화

연번	자치법규 명	개정내용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제목 “(계리의 원칙)”을 “(회계 처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각각 “처리”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제6조제6호 중 “양양 및”을 “계승발전 및”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4.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자치법규 정비)

5.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6. 검토의견

-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정된 각각의 조례 중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국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상황에도 맞아야 하나, 우리나라 법령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제목 “계리의 원칙”을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제6조제6호 중 “양양 밧”을 “계승발전 밧”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각각 개정하고자 함.
- 따라서 이와 같이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말로 바꾸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용어를 널리 쓰이는 쉬운 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동 안건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 목적에도 부합하고 있다고 할 것임.